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산업디자인진흥법」 체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법제 연구

2021. 2. 25.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인용 하실 때는 반드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체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법제 연구 보고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한 "디자인정책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출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산업디자인진흥법」 체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법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2. 25.

■ 연구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참여자

책임연구원 (윤계형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정명운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I.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체계의 개편 필요성 .....	1
II. 디자인 진흥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실체적 규정의 정비 .....	2
제2장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 .....	5
I.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의의 및 법제 연혁 .....	5
1.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의의 .....	5
2.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요 연혁 .....	5
3. 입법연혁의 특징 .....	18
II.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요 내용 분석 .....	19
1. 목적조항(제1조) .....	19
2. 정의조항(제2조) .....	20
3.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	20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제4조) .....	21
5. 산업디자인의 육성 · 개발사업(제5조) .....	21
6. 표준계약서의 제정 · 보급(제5조의2) .....	22
7.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제6조) .....	23
8.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8조) .....	23

9.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9조) .....	24
10.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제9조의2) .....	25
11. 산업디자인의 보호(제10조) .....	26
1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제10조의2) .....	26
1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0조의3) .....	27
14. 한국디자인진흥원 관련 규율(제11조·제12조부터 제16조·제19조) .....	27
15.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제11조의2) .....	29
<b>III.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한계 및 문제점 .....</b>	<b>30</b>
1. 규율대상·목표 등에 있어서의 불명확성 .....	30
2.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미비 .....	31
3. 디자인 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구축 미흡	32
4. 진흥법으로서의 체계성 미비 .....	33
5. 국가/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배분 미흡 .....	35
6. 디자인 분야 진흥정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부족 .....	36
7.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 중심의 규율 체계로 인한 적극적 동력 확보 미약 .....	37
<b>제3장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 방향 검토 .....</b>	<b>39</b>
I.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 방향 모색에 있어서 고려요소 .....	39
II.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 검토 .....	40

1. 제1안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	40
2. 제2안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일부개정만을 추진하는 방안 .....	41
3. 소 결 .....	42
III.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부개정 필요성 .....	43
1. 디자인 진흥에 관한 일반법 부재 .....	43
2.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법체계상 모호한 위상의 해소 .....	43
3. 디자인 관련 법제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 .....	44
4. 디자인 진흥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성 .....	45
제4장 가칭 「디자인진흥법」의 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 .....	47
I. 법제 개선에 있어서 검토 사항 .....	47
1. 법률의 제명에 관한 입안시 고려사항 .....	47
2. 법률 체계 구성에 있어서 고려사항 .....	47
II.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안) .....	49
1.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	49
2.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구성체계 .....	50
제5장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조문안 및 설명 .....	53
I. 조문별 해설 .....	53
II. 가칭 「디자인진흥법」(안) .....	92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체계의 개편 필요성

- 디자인 분야는 개별 기업과 전체 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부가가치가 큰 영역으로서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수적임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진흥법으로서 특히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동 분야가 국민경제의 개방화·국제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는바, 동 법률이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성과와 별개로 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부처 소관의 개별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그 규율범위의 적정성 및 체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무엇보다도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핵심적인 규율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규범상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와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이라는 용어가 부가됨에 따라 마치 산업디자인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진흥법이라는 불필요한 오인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산업의 촉발 등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디자인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의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디자인 분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분야 전체의 진흥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법률인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II. 디자인 진흥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실체적 규정의 정비

- 디자인 분야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민간과 공공 분야를 아우르는 전체 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정보화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융합이 강조되고 있음
- 질 좋은 일자리와 높은 수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아온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진흥정책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는바, 무엇보다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목적으로 총 5차에 걸쳐 수립되어 해당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새로운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자인 진흥정책을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바, 총 22개조의 단출한 질과 양의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법체계로는 이러한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인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임
-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총칙 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단지 목적조항(제1조)와 정의조항(제2조)만이 존재할 뿐이고, 산업디자인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에 관한 규정만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밖에 진흥을 위한 제반 조항이 부분으로 산재되어 있는 다소 빈약한 법체계로 평가할 수 있음

-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흥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도출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면 동 법률의 제명을 포함한 법률의 전체 체계를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현행 규정에 대한 면밀한 법적 분석과 아울러 디자인과 관련된 유관 법체계상의 규율과의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병행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고 할 것임
- 본 연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 디자인과 관련하여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흥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아울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장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

### I.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의의 및 법제 연혁

#### 1.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의의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동 법률의 전신인 (구)「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는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현행과는 차이가 존재하였음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별도의 장·절체계의 구분없이 총 2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제4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제5조),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제5조의2),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8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9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제9조의2), 산업디자인의 보호(제10조),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제10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0조의3),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제11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제12조) 등을 주요한 규정으로 담고 있음

#### 2.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요 연혁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신이 되는 (구)「디자인·포장진흥법」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을 기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되었음
- (구)「디자인·포장진흥법」은 "디자인"의 개념을 "인간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의 창조 및 개선행위를 뜻하며 이에는 산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여 디자인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음

- 1996년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법률 제명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 현행의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촉진과 그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하여 포장용기 및 제작기술분야를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서, 현행과 같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규범상 개념의 토대가 구축됨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1977년 법률 제정 이후 2020년 5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31차례의 개정이 다음의 도표와 같이 이루어졌는바, 대부분 일부개정이었으나 2차례의 전부개정도 있었음(3차례에 걸친 전부개정의 시도도 있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함)

[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입법연혁

구분	제명	제안일	공포	발의자	주요내용	디자인 범위
1	디자인·포장진흥법	'77.10.28.	'77.12.31.	류기정 의원 등 2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법 제정</li> <li>·한국디자인포장센터</li> </ul>	산업, 공예, 시각, 포장
2		'90.12.13. (전부)	'91.07.15.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포장진흥법」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 제명 개정</li> <li>·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상공부 소속)</li> <li>·「한국디자인포장센터」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li> </ul>	산업 디자인 (제품·환경·시각), 포장
3		'93.03.06.	'93.03.06.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4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94.12.22.	'95.01.01.	타법개정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삭제	
5		'96.11.15. (전부)	'97.01.01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명 개정</li> <li>·「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 → 「산업 디자인진흥위원회」</li> <li>·「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한국산업</li> </ul>	산업 디자인 (제품, 포장, 환경, 시각)

구분	제명	제안일	공포	발의자	주요내용	디자인 범위
6	산업 디자인 진흥법	'98.12. 30.	'99.02. 05.	위원장	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우수산업디자인상품 등록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 삭제	산업 디자인 (제품, 포장, 환경, 시각)
7		'00.11. 13.	'01.02. 03.	정부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신설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신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	
8		'04.12. 01.	'05.08. 27.	김태년 의원 등 10인	·전문인력의 양성 및 실태조사를 국가 및 시·도가 공동 추진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정부 및 시·도사 공동추진	
9		'06.04. 28.	'06.10. 29.	타법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발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개정	
10	산업 디자인 진흥법	'06.10. 23 (전부)	-	김태년 의원 등 40인	·「산업디자인진흥법」→「디자인산업진흥법」 ·디자인산업진흥시설과 진흥단지 지정하여 세제·자금 등 지원 여건 조성 ·지역별 디자인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처리 등 업무 민간위탁, 미자격 전문회사 등록필증 반납조항 신설 등 ·국내 우수디자인상품과 해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 협정체결 지원 ·디자인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 중 디자인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 추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과태료부과 등)	-
11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지식경제부령 등 개정	
12		'08.12. 29.	'09.05. 21.	정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한글화 등 법률 용어 정리	(제품, 포장, 환경)

구분	제명	제안일	공포	발의자	주요내용	디자인 범위
13		‘09.05. 21.	‘09.05. 21.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의 한글화 등 법률 용어 정리</li> </ul>	경 , 시 각)
14		‘11.02. 25. (전부)	-	배은희 의원 등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디자인의 범위 명확화(분야에 대한 정의 신설, 특수용어 의미 명확화 등)</li> <li>·산업디자인진흥정책 심의·조정 자문기구로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신설</li> <li>·산업디자인의 기반조성 강화</li> <li>·산업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보강</li> </ul>	-
15		‘11.05. 25.	-	이명수 의원 등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li> </ul>	-
16		‘11.11. 28. (전부)	-	배은희 의원 등 1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함</li> <li>·5년마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지역산업디자인진흥계획 수립·시행</li> <li>·공공기관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구매 촉진</li> <li>·산업디자인사업의 거래실태 등 분석하여 결과 공표</li> </ul>	-
17		‘13.03. 23.	‘13.03. 23.	타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개정</li> </ul>	산업 디자인 (제품, 포장, 환경, 시각)
18		‘13.08. 19.	-	전순옥 의원 등 1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디자인의 정의에 패션디자인 추가, 패션분야 지원 근거 명확화</li> </ul>	-
19	산업 디자인 진흥법	‘13.11. 04.	‘14.01. 14.	강창일 의원 등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 칙 조항 신설(별금형)</li> </ul>	산업 디자인 (제품, 포장, 환경, 시각)
20		‘13.12. 10.	‘14.05. 20.	이명수 의원 등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추가</li> </ul>	
21		‘14.03. 04.	‘14.05. 20.	조경태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산절차를 공운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li> </ul>	

구분	제명	제안일	공포	발의자	주요내용	디자인 범위
22				등 10인	하게 개정하여 혼란 방지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서비스디자인)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근거 마련(창업 보육 지원사업 등 신설, 제5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삭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	
23	'14.10. 22.	'14.12. 30.	정부	김동철 의원 등 12인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근거 마련 등 ·지역디자인센터협의회 설치, 정부가 지역 디자인센터 운영 경비 등 지원	
24	'14.11. 10.	'15.12. 22.	이원욱 의원 등 11인	·디자인용역계약표준계약의 제정 및 보급		
25	'15.02. 27.	'15.12. 22.	홍영표 의원등 11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산업 디자인 (제품, 포장, 환경, 시각, 서비스)	
26	'15.01. 30.	'15.12. 22.	이원욱 의원 등 13인	·비밀업수의 의무		
27	'17.10. 20.	-	손혜원 의원 등 10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법률에 명시,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업무 민간기관 이양		
28	'18.07. 13.	-	윤한홍 의원 등 10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신고인에게 신고여부 14일이내 통지 등		
29	'18.07. 31.		정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신고인에게 신고여부 14일이내 통지 등		
30	'18.09. 20.	'18.12. 31.	김종희 의원 등 10인	·분쟁조정 등 심의의결을 필요로하는 위원회를 설치할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함		
31	'18.12. 10.	-	황주홍 의원 등 10인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유리천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 디자인 · 포장진흥법의 제정

- 「디자인 · 포장진흥법」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0호로 제정되었음. 6 · 25 이후 1960년대 들어 경제부흥을 위하여 수출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정부의 디자인 진흥정책이 시작되었음. 이에 따라, 수출증대를 위하여 설립된 몇 가지 기관들을 통합하여 정부의 수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진흥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0년에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동법의 제정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두었음
- 동법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과 포장의 정의(제2조), 디자인 · 포장진흥위원회의 설치(제3조 제2항),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설립(제4조), 디자인포장진흥기금의 설치(제5조) 등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음
- 동법은 디자인에 관해서 '인간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의 창조 및 개선행위를 뜻하며, 이에는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디자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포장에 관해서는 '물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시장(施裝)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2항)
- 또한, 센터의 설립근거와 사업내용(제4조)과 함께 진흥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출연금 · 센터의 순이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디자인포장진흥기금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5조 내지 제6조). 그 외에도 수수료 등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센터에 관한 보칙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법은 센터의 설립과 센터를 통한 진흥정책의 집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으로의 개정(제1차 개정)

- 전술한 「디자인 · 포장진흥법」은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1호로 전문개정과 함께 법명을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으로 변경하였음. 동법은 총 23개 조문으로 약 10개의 조문이 증가하였으며, 그 대상을 디자인에서 산업디자인과 포장으로 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률에 등장하게 되었음
- 목적조항에서는 「디자인 · 포장진흥법」에서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동법 제1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증대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즉, 이로써 초기의 정부 주도의 육성단계를 벗어나 업계에 대한 지원단계로 접어들었고, 디자인 자체에 대한 진흥뿐 아니라,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디자인산업이 조성기로 접어들었음을 밝히고 있음
- 정의조항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대신 산업디자인에 대해서 ‘제품 등의 미 ·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로,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1호). 이 정의규정은 현행법상의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거의 일치하고, 다만, 현행법에서는 포장에 대한 정의가 삭제되면서 산업디자인의 일종으로서 포장디자인이 포함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현행법 제2조 참조)
- 동법에서는 진흥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종합진흥계획(제3조), 연구개발사업(제4조),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제6조), 전문인력양성(제8조),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9조)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 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산업디자인진흥정책이 구법보다 좀더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외 개정사항으로는 법명의 변경에 따라 디자인포장진흥기금이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으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변경되었음

#### (3) 제2차 개정

-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은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되었음. 그러나 동개정은 조문의 변경은 없고, 「정부조직법」 부칙(제4541호, 1993.3.6)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변경하는데 그쳤음

#### (4) 제3차 개정

- 동법은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1호로 일부개정되었는 바, 동 개정 역시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조문을 삭제하였음(「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791호, 1994. 12. 22 참조)
- 삭제된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산업디자인 · 포장기금의 설치(제10조), 기금의 조성(제11조), 기금의 사용(제12조), 기금의 운용 · 관리(제13조)에 관한 조문으로서, 기존 각종 기금이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 · 관리 및 운용되던 것을 「기금관리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 운용을 하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 및 별표2 참조)
- 이러한 점에서,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별도의 기금설치는 현행 법체계상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5) 제4차 개정(「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제명 개정)

-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은 1996년 12월 30일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전문개정되었음(법률 제5214호). 법명의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디

자인과 포장을 구분하지 않고, 포장을 산업디자인의 일부인 포장디자인으로 포섭하였음(제2조). 이에 따라, 각 조항에서는 포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산업디자인으로 통칭되었음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제3조)에 관해서는 기존의 종합진흥계획을 산업디자인진흥계획과 포장진흥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던 것을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으로 통일하였음. 또한 종합계획의 내용에 관해서는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등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기존에 전문회사라는 용어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변경하고, 지원내용도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전문요원의 파견을 삭제하였고 연구성과의 제공 및 첨단개발기법의 지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직접적 지원에서 사업자 주도의 간접적 지원방법으로 변경되었음
- 또한, 본 개정에서는 제10조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비록 명목적인 규정이기는 하나, 사업디자인의 모방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규정하였음. 그리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흥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 (6) 제5차 개정

- 동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73호로 일부개정 되었다. 동 개정은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동법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였음
- 또한,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되었음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관해서는 기존에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은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개정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그 대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던 것을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제17조 및 동조 위반시의 과태료부과규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동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 **(7) 제6차 개정**

- 동법은 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15호로 6차 개정되었음. 동 개정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음. 이에 의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여 디자인 전반에 관한 진흥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
- 제5조에서는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을 신설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동조는 현행법 제5조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제8조에서는 기존 조문에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개정에서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수급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제10조의2에서는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산업디자인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8) 제7차 개정**

- 동법은 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6호로 7차 개정되었음. 동 개정은 일부개정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주체를 정부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국가와 시도 또

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해 기존에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정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개정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로 확대하였고, 전문인력실태조사와 인력수급에 관한 개선방안수립의 주체로 산자부장관 이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였음(제8조)
- 또한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해서도 기존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노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개정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확대하였음(제10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조사의 주체에 관해서도 산업자원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되었음

#### **(9) 제8차 개정**

- 동법은 2006년 4월 26일 법률 제7949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동 개정은 「산업발전법」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에 관한 제4조 제3항의 규정 중 위 법률의 제명을 단순개정 하는데 그쳤음

#### **(10) 제9차 개정**

- 동법은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동개정은 정부부처 명칭변경에 따라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변경하는 단순개정에 불과하였음

#### **(11) 제10차 개정**

- 동법은 2009년 5월 21일 법률 제9688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동개정은 법률 용어순화 차원에서 용어 및 각 조문 문장을 순화하는 정도이고 실체적 조항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2) 제11차 개정

- 동법은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13) 제12차 개정

- 동법은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38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 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14) 제13차 개정

- 동법은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08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주체와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개선방안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각각 명시하는 한편, 현행법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 (15) 제14차 개정

- 동법은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28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16) 제15차 개정

- 동법은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595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산업디자인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한편,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디자인진흥원 아래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그 효력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최근 산업 간의 융합과 지역 경제권간의 협력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자인에 대한 지역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3개 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미비하여 시·도의 현실에 맞는 산업디자인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전개가 미진한 실정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 밖에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용(盜用)의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17) 제16차 개정

- 동법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8호로 일부개정 되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되는 인 · 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현행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3. 입법연혁의 특징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법제 연혁의 주된 특징으로는 첫째, 법률 제명이

나 디자인의 개념 정의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제 개편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현행과 같은 "산업디자인"의 개념 정의에 이르기 까지 수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산업디자인"이라는 다소 협소한 외연을 가지는 개념에 머물게 된 점, 둘째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업디자인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셋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제6조)이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9조) 등 개별적 성격의 진흥정책에 관한 정비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산업디자인의 진흥정책·사업 및 기반조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한 점 등을 꼽을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제정된 지 약 40년여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적지 않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제도적 기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II.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요 내용 분석

### 1. 목적조항(제1조)

- (현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에 따른 목적조항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동 법률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검토)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 촉진과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 동 법률이 디자인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진흥법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디자인 진흥정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2. 정의조항(제2조)

- (현황) 동 법률이 규율해야 하는 핵심대상인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디자인 전체 영역 중 일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낳고 있으나, 규범상 개념정의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디자인 일반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정 산업에 국한된 디자인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디자인 중에서 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어(제2조제1호 바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협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3.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기본정책 방향, ②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③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검토) 종합계획의 수립주체와 포함사항에 대한 최소한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획의 수립주기·절차·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나 자료 요청·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 등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기본적 규율 사항이 전체적으로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거시적인 성격의 종합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동 조항만으로 디자인 분야의 진흥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제4조)

-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다음(제4조제1항),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열거하는 한편 이 기관 등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효율적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상 규율을 살펴볼 때 동 사업의 실시가 동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규율 중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주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 등의 범위와 자금 출연의 근거 등에만 치중한 규율을 두고 있는 점, 그 구체적인 규율은 대부분 행정입법에 담겨져 있다는 점, 동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과의 변별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나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 단계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 5.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제5조)

- (현황) 정부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①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②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③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시함(제1항).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①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②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③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④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⑤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 밖의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검토) 동 법률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과 관련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바,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각각 나누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 부분이 특기할만한 부분임. 하지만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규율이 미비하고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적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사업에 불과하다는 점(영 제7조 및 제8조)이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임

## 6. 표준계약서의 제정 · 보급(제5조의2)

-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의의)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

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595호)을 통하여 2015. 12. 22.부터 시행되고 있음

- (검토) 산업디자인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권리고적 효력에 머물고 있는 점, 디자인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법체계상의 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 7.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제6조)

-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1항), 이에 의거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고,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제2항 및 제4항)
- (검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과 이에 따른 시상 및 표지 등의 활용을 통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 등 대부분의 사항이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고 법률 단계에서의 규율이 미비한 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지원 사항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음

## 8.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8조)

- (현황) 국가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1항),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產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제2항).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제3항)

- (검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가와 시·도 등의 다양한 공적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의 규정에 머물고 있고 국가/시·도/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다양한 공적 주체가 단순히 열거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 분배에 관한 규율이 미흡하며, 특히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조사나 수급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 내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9.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9조)

- (현황)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정의내리고 정부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①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③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④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1)</sup>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조항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상의 대표적인 진흥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바, 다만 특정 회사에 국한된 지원사항에 머물고 있어 디자인 분야 전체에 대한 진흥을 선도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위임이 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이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지 않아 지역 단위에서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가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10.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제9조의2)

- (현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이러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제2항). 또한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게 하여(제4항) 산업디자인 개발의 적정한 대가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검토) 동 조항은 국가기관등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로써 적정한 대가의 지급을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협조 사항에 관한 규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국가기관등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수준

의 추상적인 규율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을 것임. 동 제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주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

## 11. 산업디자인의 보호(제10조)

- (현황)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 (검토)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산업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동 조항은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국가 등 공적 주체의 일반적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하지만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업디자인 보호 노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율이 부족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함. 더 나아가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기능 분배에 관한 고려도 불충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1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제10조의2)

-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20조의3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검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국내외 산업디자인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일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과 결부된 조사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이은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율의 배치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산업디자인 통계의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규율이 법률상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디자인 분야의 각종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디자인 데이터 정책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 1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0조의3)

- (현황)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서 조정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분쟁의 조정 절차, 조정의 거부 내지 중지 사유, 조정 성립의 절차 및 효력,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진흥법에서 두고 있는 입법례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나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꼽아볼 수 있음. 이는 산업디자인이나 산업재산권, 콘텐트 등이 지적재산권과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인 쟁송수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14. 한국디자인진흥원 관련 규율(제11조·제12조부터 제16조·제19조)

- (현황)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음(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진흥원의 사업으로는 개발 지원

사업, 전시사업, 출판 및 홍보사업, 정보화사업, 교육·연수사업,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정부의 위촉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음(제11조 제4항). 진흥원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1조 제5항). 한편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음(제12조).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제13조제2항).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4조제1항),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제14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15조제1항).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담하며(제16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제19조).

- (검토) 진흥원은 동 법률상의 각종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그 명칭이나 주요 사업 등에 있어서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적시되지 않아 디자인 분야 전반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진흥원이 동 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무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적지 않게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임

## 15.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제11조의2)

- (현황) 시 · 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 진흥사업 · 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 · 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제1항).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제3항),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음(제4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sup>2)</sup>
- (검토) 지역디자인센터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3595호)을 통하여 2015년에 그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도입되었는바, 산업 간의 융합과 지역 경제권간의 협력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자인에 대한 지역산업의 수요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3개 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미비 하여 시 · 도의 현실에 맞는 산업디자인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전개가 미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지역 단위의 조직임.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과 규율 등을 위주로 한 기존의 Top-Down 방식의 「산업디자인진흥법」 거버넌스에 일부 변경을 기하여, 지역에 초점을 둔 디자인 진흥정책을 전

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개하기 위한 목표가 반영되어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진흥원과의 관계 설정이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무엇보다도 시·도·소속의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지역사회·지역산업 등에 초점을 둔 Bottom-up 형태의 거버넌스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법제 개선에 대한 접근도 필요

### III.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한계 및 문제점

#### 1. 규율대상·목표 등에 있어서의 불명확성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을 핵심적인 규율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률임
- 이러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법률 제명이나 목적조항만 놓고 볼 때 동 법률이 산업 분야에서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하지만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명시된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의 규범상 정의가 “디자인”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고, 동 법률에 포함된 규율사항이 산업 분야에서의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은 디자인 분야 전반의 진흥에 관한 정책 사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산업 분야에 국한된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인지, 아니면 산업 분야와 관련성이 클 수밖에 없는 디자인 분야 전반의 진흥에 관한 법률인지 여부가 상당히 모호한바 이는 동 법률이 그 규율대상이나 목표 등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기인한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음

## 2.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미비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수립, 산업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율대상을 “산업디자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고 있음
-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문화산업의 일부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에서 “산업디자인” 영역을 제외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제2조제1호바목) 「산업디자인진흥법」이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실정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경우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종으로 포섭하고는 있지만, 디자인보다는 문화산업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는 법률로서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진흥에 관한 규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일반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디자인 분야 일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 디자인권과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법률로서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역시 디자인 분

야 일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결국 디자인 분야의 진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률은 「산업디자인진흥법」뿐이며, 비록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동 법상 해당 용어의 개념적 범위가 사실상 “디자인”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 “디자인”은 산업이라는 용어를 굳이 부가하지 않더라도 산업 분야와 필수불가결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 그 법적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됨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디자인 분야 전반의 진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규정 보다는 특정 지원사업에 치중된 미시적 규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디자인 관련 진흥정책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규율이 크게 미흡한 실정인바, 디자인 분야가 현대 사회의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디자인진흥법」이 디자인 분야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디자인 진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의 변경을 포함한 동 법률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 3. 디자인 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구축 미흡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법제에 있어서 사실상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반 지원 사항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법률이기는 하지만, 디자인 진흥정책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거버넌스의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의 수립주체와 포함사항 등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규율만을 두고 있어 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담보해야 할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서의 내

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계획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동 조항만으로 디자인 분야의 진흥정책 전반을 총괄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에 대한 근거나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의 실시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해놓고는 있으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범위를 열거하거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선언적이고도 추상적인 수준의 책무규정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디자인 진흥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의 지원을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적 위상을 가지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디자인 진흥정책을 거시적·종합적인 차원에서 조율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적 거버넌스에 관한 법적 기반을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1999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773호)을 통하여 비록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적도 있었는바, 디자인 진흥정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원회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4. 진흥법으로서의 체계성 미비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상 디자인진흥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중추로 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등을 핵심적인 진흥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계획이 “개발 촉진”과 “진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진흥사업은 “연구 및 진흥사업”이나 “육성 ·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 계획과 사업 간에 명확한 법적 연계성이 긴밀하게 구현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종합계획과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시행을 결부시키도록 한 규정은 존재하나 종합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할 중간 단계적 성격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율이 누락되어 있어 거시적 정책사항을 위주로 5년마다 수립<sup>3)</sup>되고 있는 종합계획의 특징을 고려할 때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디자인 정책의 수시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며, 연구 및 진흥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계획의 일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경우 (당시) 지식경제부가 2012년에 수립한 제5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2013-2017) 이후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규정만 놓고 보더라도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피드백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율이 누락되어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울러 각종 진흥정책에 관한 규율과 더불어 “산업디자인의 보호”(제10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0조의3) 등 산업디자인의 보호와 관련된 규율이 과정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진흥법으로서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어 디자인 분야 전반의 진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도 아쉬운 지점임

---

3)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하위법령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명확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 5. 국가/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배분 미흡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디자인진흥을 위하여 추진하여 할 각종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대신 주요 진흥정책이나 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국가·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적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2015년에 도입된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제11조의2)의 조항에서 드러나듯 디자인 진흥정책은 지역 단위의 각종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대부분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로 시·도지사)를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도 대부분 추상적인 시책 추진 의무에 그치고 있어 중앙과는 또 다른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지역 차원에서의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책무 규정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국가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주체이며, 행정부를 의미하는 정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소관 부처,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공적 주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디자인 진흥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차별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조항의 경우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거나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을 뿐 지역 단위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양성방안에 대한 규율은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규율의 구체성을 강화(예를 들어

지역인재의 발굴 등)한다거나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 6. 디자인 분야 진흥정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부족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등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나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5조의2 제2항),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0조의3 제2항) 이 바로 그러한 규정례라고 할 것임
-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참여 규정 이외에 산업디자인진흥정책의 수립·추진 등의 과정에서 디자인 분야의 민간전문가나 디자인 분야의 이해관계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충실히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대표적으로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 디자인 분야의 민간 부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규범상의 근거가 미비함
- 연구 및 진흥사업에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고 있으나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의견수렴이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우수 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지원이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처럼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의 활발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규율들을 규범에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

## 7.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 중심의 규율 체계로 인한 적극적 동력 확보 미약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에 대한 진흥정책을 별도의 체계없이 필요한 규율들을 열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률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대부분의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에 위임해두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에서 상세한 규율을 둘 경우 변화하는 규율수요에 대한 탄력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디자인 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함에 있어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규범만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 특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디자인보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과 같이 디자인과 관련한 법령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법현실에서,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이 아닌 법률에서 진흥과 관련된 제반 규율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전체 규율체계와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법제개선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상의 규율 중에서 위임근거가 미흡하거나 상향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법률에 그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제3장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 방향 검토

### I.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 방향 모색에 있어서 고려요소

- 법제개선의 합리적인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사항으로서 제반 고려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필요한 고려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방향 모색에 있어서 고려요소로는 ① 급변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수용, ② 디자인 분야의 관련 주체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③ 구체적인 법 제개정안 도출시 법제상 제반 원칙의 고려, ④ 디자인 분야 관련 법제와의 규율상 조화 추구, ⑤ 디자인 진흥정책과 관련된 실체적 규정의 정비 및 보완, ⑥ 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현행 행정실무여건의 고려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각 고려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방향 모색에 있어서 고려요소					
<b>1</b> 급변하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수용	<b>2</b> 디자인 분야의 관련 주체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b>3</b> 구체적인 법 제개정안 도출시 법제상 제반 원칙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 산업혁명 및 뉴노멀시대에 있어서 AI, ICT 등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디자인 융합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진흥 정책의 법제도 기반 구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등의 명확한 역할 및 기능 배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검토가 있어야 하며 특히 최종소비자 중심의 법제를 지향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 전부개정 내지 일부개정 등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명확성 원칙, 과정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위임입법의 원칙, 절차 및 방식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li> </ul>			
<b>4</b> 디자인 분야 관련 법제와의 규율상 조화 추구	<b>5</b> 디자인 진흥정책과 관련된 실체적 규정의 정비 및 보완	<b>6</b> 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현행 행정실무여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보호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디자인 관련 법제상에 담긴 규정과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전제로 규율상의 조화를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 분야에 대한 진흥정책 일반을 선도할 수 있는 법제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는 물론 장래의 디자인 진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법제를 통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 및 진흥사업, 육성 및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실무상의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새로운 법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함</li> </ul>			

## II.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 검토

### 1. 제1안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 (주요 내용)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제명을 (가칭)「디자인진흥법」으로 개편하고 관련 규율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디자인 진흥정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함
- (장점) 디자인의 산업적·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일반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국내의 법현실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것임. 공공분야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규율사항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디자인 진흥정책을 사실상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유일무이한 상황인바,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산업디자인”을 핵심적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의 규율 관계 설정을 놓고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경우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을 정의하면서도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디자인에 특화된 진흥정책에 관한 규율은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진흥법」으로 개편하여 디자인 진흥을 위한 규범상의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제1안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임. 또한 신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법체계를 구성하게 될 경우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비체계성이라는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적지 않은 장점이라고 할 것임
- (단점)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진흥법」으로 개편하게 될 경

우 새로이 제정된 신법의 소관부처를 두고 논란이 예상됨. 즉 현행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산업과 연관된 디자인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논리에 의할 경우 “산업”이라는 용어를 제외한 디자인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진흥법」의 제정 추진은 유관 부처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적지 않음.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토대로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진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더하여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 분야에 필요한 진흥정책을 새로이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적지 않은 입법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2. 제2안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일부개정만을 추진하는 방안

- (주요 내용)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율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진흥정책의 강화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동 법률에 일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임. 법률 제명 개편이나 규율 대상의 변경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법률 개정이 아니라 현행 법률 내에서의 부분적인 개선·보완을 통하여 디자인 분야 진흥정책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함
- (장점)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비록 “산업디자인”을 규율대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으나 산업디자인의 개념 정의가 디자인의 개념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 법률에 담겨진 각종 진흥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사실상 디자인 분야의 진흥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이미 디자인 분야의 실질적인 일반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전제로 할 때 제2안은 전면적인 법률 개편으로 관련 부처와 불필요한 갈등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디자인 진흥정책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디자인이 산업 영역과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통하여 유지되고 강조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임

- (단점)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규율 내용을 보완하는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제2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의 규율 관계를 둘러싼 법적 혼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디자인 분야 중의 일부로서 산업디자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간에 디자인 진흥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법제도상이 모멘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2안의 단점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머물 경우 규율의 양과 질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은 현행 법률상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감안해야 할 지점이라고 할 것임

### 3. 소 결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현행 규율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진흥정책의 강화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동 법률에 일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안의 경우 디자인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법의 명확한 위상의 재정립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규율대상·목표 등에 있어서 명확성의 미흡, 산업디자인 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규율 부족, 진흥법으로서의 체계성 미비, 유관 공적 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관한 규율의 구체성 미흡,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규율의 미비, 행정입법 중심의 규정 체계의 법적 문제 등 법률의 형식과 내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 내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의 전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바, 법률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면 그 적용 대상을 디자인 분야로까지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제개선방향으로 사료됨

-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일반법이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법현실을 타개하고 산업융합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자인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실무상 여건에서 사실상 일반법으로 작동되고 있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가칭 「디자인진흥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1안이 가장 합리적인 법제개선방향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음

### III.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면개정 필요성

#### 1. 디자인 진흥에 관한 일반법 부재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등 디자인과 관련된 법률은 다수 존재하나 정작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일반법은 부재한 실정이며, 디자인 진흥정책을 사실상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존재하나 이마저도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산업디자인을 제외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미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지향과 관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음은 자명함. 이에 따라 각종 제품·서비스 등에 있어서 디자인이 가지는 중요성은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되고 있음. 디자인의 이러한 산업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본격적으로 선도해 나갈 법제도적 기반이 불명확한 것은 분명 타개해 나가야 할 장애요소임에 분명하므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전면개정하여 「디자인진흥법」으로 개편함으로써 디자인 진흥에 관한 일반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2.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법체계상 모호한 위상의 해소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을 규율대상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디자인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된 범위까지 아우르고 있어 디자인 분야의 실질적인 일반법으로 작

동하고 있음

- 문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이러한 모호한 규율체계로 인하여 디자인 분야 전반을 포섭할 수 있는 일반법의 확고한 정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존재는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 분야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상정하게 됨에 따라 디자인 전반에 대한 진흥과 산업디자인에 대한 진흥으로 마치 이원화된 듯한 규범상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정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경우 디자인 분야 전반에 대한 특화된 진흥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디자인진흥법」의 제정 추진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임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법체계상 모호한 위상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디자인 분야 전반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 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한 「디자인진흥법」의 제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

### 3. 디자인 관련 법제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진흥계획과 지역 단위에서의 진흥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정작 디자인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법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존재하는 등 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 기반의 구축이 요원한 상황임
- 또한 디자인등록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하여 디자인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효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법현실에서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일반법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전면개편하여 명실상부한 디자인 진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디자인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디자인과 관련된 법제상 제반 규율과의 명확하고도 조화로운 규율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물론 행정실무적 차원에서의 혼선을 차단하고 디자인 관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4. 디자인 진흥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성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산업 영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 분야의 진흥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정책 내지 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은 그 규율의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규정의 양과 질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족한 현행 법체계로는 디자인 진흥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진흥법」으로 개편하는 것은 그 규율 대상을 “산업디자인”을 넘어선 디자인 분야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의의와 더불어 디자인 진흥정책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실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산업융합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제4장 가칭 「디자인진흥법」의 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

### I. 법제 개선에 있어서 검토 사항

#### 1. 법률의 제명에 관한 입안시 고려사항

- (특성의 반영)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지어야 함<sup>4)</sup>
- (대표성)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유성) 법령의 제명은 법령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의 제명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불필요한 규율상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제명을 「디자인진흥법」으로 명확하게 개편함으로써 디자인 분야의 진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sup>5)</sup>

#### 2. 법률 체계 구성에 있어서 고려사항

- (장의 구분) 법률 체계 구성에 있어서 장(章)의 구분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해당 법률에 내재된 규율사항을 그 입법목표에 따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수법자 및 행정실무 차원에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총칙과 본칙의 구성) 법률의 총칙 부문에는 목적 조항, 정의 조항, 국

4) 법령 입안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이하 같음.

5) 법률 제명 및 주요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팀의 초기 제안은 별첨 자료 참고.

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율이 담기는 것이 통상적임. 본칙의 경우 절대적인 입안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거시적 차원의 기본계획 내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위원회 등 유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게 됨.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해당 분야의 진흥 기반에 관한 사항, 해당 분야의 본격적인 발전 내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함

- (기존 법률상 규율에 대한 고려)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법제개선방향 모색에 있어서 고려요소로 검토한 것처럼 기존의 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의 행정실무상 여건을 도외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이러한 차원을 감안할 때 「디자인진흥법」의 새로운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중요한 규율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가급적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비체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규율사항을 이관하되 전체 법체계 내에서 해당 조항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II.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안)

### 1.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 (총칙) 기존에 산업디자인에 국한되었던 「산업디자인진흥법」 상의 목적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로운 목적 조항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디자인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개념으로서 “디자인”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조항을 마련함.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상과 역할 등에 걸맞는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유관 법률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동 법률이 일반법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총칙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제2장) 디자인 진흥정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장으로 편성하여, 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디자인진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조항을 제2장에 편성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의 연혁에 몇 차례 개편되었고 폐지된 바 있는 디자인진흥을 위한 위원회 조직의 법적 근거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제2장에 배치하여 지역적 단위에서의 디자인 진흥정책의 추진을 표방하는데 주안점을 둠
- (제3장) 디자인 진흥 기반의 조성에 관한 장으로 편재하여 진흥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통계의 작성에 덧붙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상의 주요 진흥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장에 배치하여 법률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4장) 디자인산업 활성화라는 표제 하에 현행 법률상 규정된 각종 진흥사업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디자인의 발전이 디자인의 보호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또한 고려하여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본 장에 포함시킴

- (제5장) 디자인 분쟁의 조정이라는 규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 하나만을 두고 있는 실정임. 가칭 「디자인진흥법」에서는 「발명진흥법」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디자인 진흥에 있어서 분쟁의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편성하고, 현행 법령상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 조정과 관련된 제반 조항을 상향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제6장)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상 산업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주요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관한 규율이 적지 않은바, 새로운 법률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위상에 걸맞는 규율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제7장 및 제8장) 보칙과 별칙에 관한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해당 법률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본 장에 포함될 규율사항은 본칙의 규율사항의 정비에 따라 추후 보강될 수 있을 것임

## 2.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구성체계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별도의 장 구성 없이 개별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아래 「디자인진흥법」(안)은 총칙, 디자인 진흥정책의 주чин체계, 디자인 진흥 기반의 조성, 디자인산업의 활성화, 디자인 분쟁의 조정, 한국디자인진흥원, 보칙, 별칙 등 총 9개장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음

[표]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구성체계

구 분	제정안 체계의 구성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수정 · 보완
	제2조	정 의	수정 · 보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신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제2장	제5조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수정 · 보완

디자인 진흥 정책의 추진 체계	제6조	디자인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	신설
	제7조	디자인진흥위원회	신설
	제8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이관(제11조의2)
제3장 디자인 진흥 기반의 조성	제9조	디자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수정 · 보완
	제10조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 운영	신설
	제11조	디자인의 연구 · 진흥사업의 실시 등	이관(제4조)
	제12조	디자인의 육성 · 개발사업	이관(제5조)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이관(제8조)
제4장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디자이너의 보호	제14조	표준계약서의 제정 · 보급	이관(제5조의2)
	제15조	우수디자인의 인증 등	이관(제6조) / 수정 · 보완
	제16조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이관(제9조)
	제17조	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이관(제9조의2)
	제18조	디자인의 보호	이관(제10조)
	제19조	디자이너의 신고	신설
	제20조	디자이너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등	신설
	제21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신설
	제22조	디자인의 날	신설
	제2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관(제10조의3)
제5장 디자인 분쟁의 조정	제24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신설
	제25조	위원의 해촉	신설
	제26조	분쟁조정의 절차 등	신설
	제27조	한국디자인원의 설립 등	이관(제11조)
제6장 한국디자인원	제28조	한국디자인원의 경비 지원	이관(제12조)
	제29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이관(제13조)
	제3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관(제14조)
	제31조	보고 및 검사	이관(제15조)
	제3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관(제16조)
제7장 보칙	제33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신설
제8장 벌칙	제34조	벌칙	이관(제19조)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관(제17조)
	제36조	과태료	신설
부 칙	부 칙		신설



# 제5장 가칭 「디자인진흥법」(안)의 조문안 및 설명

## I. 조문별 해설

### 1. 입법목적

#### (1) 조문안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 분야의 진흥 기반 조성 및 지원 ·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목적조항을 통하여 동 법률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목표가 디자인 분야의 진흥 기반 조성 등을 통한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천명함. 더 나아가 디자인 분야의 진흥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결부됨을 목적 조항을 통하여 명확히 밝히고자 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경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명	조문내용
<b>소프트웨어 진흥법</b>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b>한식진흥법</b>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

### (1) 조문안

법률(안)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디자인행위”라 한다)와 그 결과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디자인</li> <li>환경디자인</li> </ol> </li> <li><b>다. 시각·포장·정보디자인</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경험디자인</li> <li>패션·텍스타일 디자인</li> <li>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li> <li>산업공예 디자인</li> <li>융합디자인</li> </ol> </li> <li>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디자인행위와 결과물</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산업”이란 디자인의 연구·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자문·활용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li> <li>“디자이너”란 디자인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산업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li> </ol>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본 법에 포함될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 조항에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과 규율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한 규율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개념을 디자인행위와 그 결과물로 일단 크게 구성하고 하위법주에 속하는 디자인 유형을 각 목에 명시하여 본 법이 디자인 전반에 대한 진흥법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개별 디자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명시되지 않은 디자인까지 포섭하기 위한 예시규정을 마련함(자목)
-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 정의를 토대로 하여 디자인산업에 관한 별도의 개념 정의를 마련함으로써 본 법이 디자인산업의 진흥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유사입법례의 경우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제반 활동을 예시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디자인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활동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자 함
- 디자인 분야 진흥의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이너에 대한 명시적인 규범상 정의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이너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현행 하위법령 중심의 규율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 타 입법례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자에 대한 별도의 우대를 위한 규율을 두거나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전문가 대우를 위한 규율을 두는 경우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바, 일단 디자인산업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를 디자이너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p>

법 명	조문내용
	<p>『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p> <p>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p>
<b>디자인보호법</b>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p>
<b>공예문화산업 진흥법</b>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p>
<b>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b>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b>인쇄문화산업 진흥법</b>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이하 생략)</p>
<b>문화산업진흥 기본법</b>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생략)</p>
<b>소프트웨어 진흥법</b>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p>

법 명	조문내용
숙련기술장려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p> <p>2. <u>“대한민국명장”</u>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p>
예술인 복지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 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p>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p>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1) 조문안

법률(안)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디자인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디자인 관련 기관·단체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2)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법 명	조문내용
	<p>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0.&gt;</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b>문화예술진흥법</b>	<p><b>제3조(시책과 권장)</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b>바둑 진흥법</b>	<p><b>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p>
<b>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b>	<p><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b>정보통신산업 진흥법</b>	<p><b>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조문안

법률(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디자인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디자인의 진흥에 있어서는 본 법이 다른 법률보다 일반법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5.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 (1) 조문안

법률(안)
제5조(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제15조에 따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제16조에 따른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에 따른 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제18조에 따른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제22조에 따른 디자인의 날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경우 계획의 수립주기·절차·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나 자료 요청·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 등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규율이 미비한 실정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조항을 대폭 수정·보완함
- 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과 같은 거시적인 사항 이외에 동 법안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계획이 디자인 진흥정책의 명실상부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입법례

법명	조문내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법 명	조문내용
	<p>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li> <li>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li> <li>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li> </ol>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원자력 진흥법	<p>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li> <li>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법 명	조문내용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 디자인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

### (1) 조문안

법률(안)
<p><b>제6조(디자인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디자인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수립주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까지 확장하여 지역이 디자인진흥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 시행계획의 평가에 있어 “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성과분석에 따른 환류체계 마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	------

법 명	조문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p><b>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b>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p><b>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li> <li>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li> <li>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li> <li>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li> <li>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li> <li>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li> </ol>

법 명	조문내용
	<p>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p> <p>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7. 디자인진흥위원회

### (1) 조문안

법률(안)
<p><b>제7조(디자인진흥위원회)</b> ① 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디자인진흥위원회는 디자인 진흥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게 되며 특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해당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에는 위원회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나 1999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773호) 전에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운용된 경우도 있었음
- 디자인 진흥정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원회 제도를 재도입하

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위원회의 명칭 : 위원회의 성격 및 유형에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 자문기관 성격의 우위원회 등이 있으나 이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지는 않음. 즉 ○○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국가○○위원회, ○○지원위원회, ○○진흥위원회 등 현재 입법례상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명칭만으로 위원회의 성격 등을 구분하기 어려움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li> <li>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li> <li>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8.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 (1) 조문안

법률(안)
<p>제8조(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디자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각종 디자인 진흥사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는 새로운 법률에서도 존치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를 이관함

## 9. 디자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1) 조문안

#### 법률(안)

**제9조(디자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디자인 진흥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자인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디자인사업자, 디자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에서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 작성 이외에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함께 규정하여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를 이관하면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 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율을 보강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b>수산종자산업육성법</b>	<p>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b>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b>	<p>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10.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 (1) 조문안

법률(안)
제10조(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

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디자인 관련 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출 등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데이터시대의 도래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디자인 관련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기존 규정의 경우 단순히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국한된 제한된 규율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빅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주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기업의 영업 비밀이 누설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여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고자 함

## (3) 참고입법례

법명	조문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

법 명	조문내용
	<p>양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11. 디자인의 연구·진흥사업의 실시 등

### (1) 조문안

법률(안)
<p><b>제11조(디자인의 연구·진흥사업의 실시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6조에 따른 디자인전문회사</li> <li>제27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원</li> <li>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li> <li>「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li> <li>국립·공립연구기관</li> <li>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함

## 12. 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 (1) 조문안

법률(안)
<p><b>제12조(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b> ① 정부는 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li><li>2. 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li><li>3. 그 밖에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li></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li><li>2. 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li><li>3. 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li><li>4. 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li><li>5. 개발된 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li><li>6. 그 밖에 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입법취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함

## 13. 전문인력의 양성 등

### (1) 조문안

법률(안)
<p><b>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등)</b>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產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p> <p><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u></p> <p>⑤ 국가나 시·도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디자인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8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p><b>제9조(전문인력의 양성)</b>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스포츠산업 진흥법	<p><b>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p>

법 명	조문내용
	<p>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14.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 (1) 조문안

법률(안)
<p><b>제14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함

## 15. 우수디자인의 인증 등

### (1) 조문안

법률(안)
<p><b>&lt;1안&gt;</b></p> <p><b>제15조(우수디자인의 인증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우수디자인 인증(이하 “우수디자인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디자인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구매지원,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우수디자인인증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디자인상품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④ 우수디자인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디자인상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디자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우수디자인의 인증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3항에 따른 우수디자인상품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안>

- 제15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④ 우수디자인상품을 선정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디자인상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디자인선정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우수디자인상품의 선정에서 더 나아가 정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공신력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돋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

법 명	조문내용
	<p>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p> <p>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li> <li>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li> <li>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철도사업법	<p>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그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서비스마크”라 한다)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p>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법 명	조문내용
	<p>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차재 등에 관한 사항</li> <li>2. 우수천일염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li> <li>3.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7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2. 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별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ol> <p>④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li> <li>2. 제4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3.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li> </ol>

## 16.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1) 조문안

#### 법률(안)

**제16조(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27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함

## 17. 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 등

### (1) 조문안

법률(안)
<p><b>제17조(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b>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등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함

## 18. 디자인의 보호

### (1) 조문안

법률(안)
<p><b>제18조(디자인의 보호)</b> ① 국가 또는 시·도는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함

## 19. 디자이너의 신고

### (1) 조문안

법률(안)
<p><b>제19조(디자이너의 신고)</b> ① 디자이너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디자이너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디자이너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자이너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디자이너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디자이너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해당 디자이너의 자격에 대한 최소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한편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p><b>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b>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법 명	조문내용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20. 디자이너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등

### (1) 조문안

법률(안)
<p><b>제20조(디자이너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자이너의 경력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이너 경력정보시스템(이하 “경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은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자신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디자이너 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디자이너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이너의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디자이너의 경력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디자이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디자이너 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p> <p>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디자이너의 경력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디자이너 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디자이너의 경력정보 등을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이너 경력증명서 제도를 도입하여 디자이너 경력을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예술인복지법	<p>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p>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 21. 불공정행위의 금지

### (1) 조문안

법률(안)
<p>제21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디자인전문회사는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디자인행위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디자이너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li> <li>2. 디자이너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li> </ol>

3. 부당하게 디자이너의 디자인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디자이너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전문회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전문회사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디자이너 처우개선 및 디자인계 만연한 불공정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조문 신설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예술인복지법	<p>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p> <p>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p> <p>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p> <p>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삭제 &lt;2019. 12. 3.&gt;</p> <p>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p>

법 명	조문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디자인의 날 등

### (1) 조문안

법률(안)
제22조(디자인의 날 등) ① 디자인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디자인의 날과 디자인 주간을 설정한다.
② 디자인의 날과 디자인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다수의 진흥법에서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기념일 내지 기념주간 등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음
- 디자인진흥법안에도 디자인의 날과 디자인 주간의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발명진흥법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의2(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법 명	조문내용
	로 정한다.

## 2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1) 조문안

법률(안)
<p><b>제2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b> ①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p> <p>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li> <li>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li> <li>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li> <li>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li> <li>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을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은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아우르고 있음

-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안 제20조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율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조문안

법률(안)
<p><b>제24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b>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li><li>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li><li>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li><li>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li><li>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li></ol>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시행령 제20조의5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바, 유사입법례인 발명진흥법의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 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규율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조정위원회 운영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함

### (3) 참고 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발명진흥법	<p>제41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 · 조정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li> <li>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li> <li>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 · 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li> <li>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li> <li>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li> </ol> <p>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 25. 위원의 해촉

### (1) 조문안

법률(안)
제2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조정 업무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참고입법례

법 명	조문내용
발명진흥법	<p>제41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 · 조정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li><li>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li><li>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 · 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li><li>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li><li>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li></ol> <p>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 26. 분쟁조정의 절차 등

### (1) 조문안

법률(안)
<p><b>제26조(분쟁조정의 절차 등)</b> ①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하여 해당 절차와 관련된 규율을 수범자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였음
- 유사입법례인 발명진흥법의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27. 한국디자인원의 설립 등

### (1) 조문안

법률(안)
<p><b>제27조(한국디자인원의 설립 등)</b> ① 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원(이하 “디자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디자인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디자인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p>

④ 디자인원은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역의 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디자인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디자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기존의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원”이라는 명칭으로 재편하여 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본 원의 조직적 토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8. 한국디자인원의 경비 지원

### (1) 조문안

#### 법률(안)

제28조(한국디자인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2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

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함

## 29. 자료의 제공 요청 등

### (1) 조문안

#### 법률(안)

**제2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디자인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디자인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 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3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함

## 30.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1) 조문안

#### 법률(안)

**제3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디자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4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함

## 31. 보고 및 검사

### (1) 조문안

#### 법률(안)

제31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디자인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자인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5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함

## 32. 비밀엄수의 의무

### (1) 조문안

#### 법률(안)

제32조(비밀엄수의 의무) 디자인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를 이관하면서 산업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으로 용어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함

## 33. 권한의 위임·위탁

### (1) 조문안

#### 법률(안)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에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법에 따른 정책 및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에 관한 규율이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함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 법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함

## 34. 벌칙

### (1) 조문안

#### 법률(안)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수디자인상품이 아닌 상품에 우수디자인상품표지를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한 자**
3.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디자이너의 경력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2)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처벌 조항 이외에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형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3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법률(안)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36. 과태료

### 법률(안)

제36조(과태료)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I. 가칭 「디자인진흥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 분야의 진흥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디자인행위”라 한다)와 그 결과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제품디자인
  - 나. 환경디자인
  - 다. 시각·포장·정보디자인
  - 라. 서비스·경험디자인
  - 마.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 사. 산업공예 디자인
  - 아. 융합디자인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디자인행위와 결과물

2. “디자인산업”이란 디자인의 연구·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자문·활용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3. “디자이너”란 디자인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산업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디자인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디자인 관련 기관·단체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디자인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디자인 진흥정책의 추진 체계

**제5조(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제15조에 따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제16조에 따른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에 따른 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제18조에 따른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제22조에 따른 디자인의 날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디자인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디자인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디자인진흥위원회)** ① 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디자인 진흥 기반의 조성

**제9조(디자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디자인 진흥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자인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디자인사업자, 디자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디자인 관련 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출 등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디자인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디자인의 연구·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디자인전문회사
2. 제27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발된 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產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시·도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디자인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디자이너의 보호

**제14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안>

**제15조(우수디자인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우수디자인 인증(이하 “우수디자인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디자인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구매지원,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우수디자인인증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디자인상품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디자인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디자인상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디자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수디자인의 인증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3항에 따른 우수디자인상품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안>

제15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디자인상품을 선정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디자인상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디자인선정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27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등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도는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디자이너의 신고)** ① 디자이너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디자이너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디자이너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자이너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디자이너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자이너의 경력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이너 경력정보시스템(이하 “경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은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산업 분야에

서 자신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디자이너 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디자이너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이너의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디자이너의 경력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디자이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디자이너 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디자이너의 경력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디자이너 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디자인전문회사는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디자인행위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디자이너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디자이너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디자이너의 디자인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디자이너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전문회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전문회사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디자인의 날 등)** ① 디자인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디자인의 날과 디자인 주간을 설정한다.

② 디자인의 날과 디자인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디자인 분쟁의 조정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한국디자인원

**제27조(한국디자인원의 설립 등)** ① 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원(이하 “디자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디자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디자인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디자인원은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 · 연수사업
6. 지역의 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 · 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디자인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

⑥ 디자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한국디자인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디자인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디자인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디자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디자인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자인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비밀엄수의 의무)** 디자인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보 칙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장 별 칙

**제34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수디자인상품이 아닌 상품에 우수디자인상품표지를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한 자
3.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디자이너의 경력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3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과태료)**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